

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5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2000년 제정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- 특히, 법률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(법률유보의 원칙),
 - 조례 제16조에서는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음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생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해당)
- 2)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폐지조례안으로 심사대상 아님
- 3) 부패영향평가, 법제심사 : 원안동의(2017. 5. 2.)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8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- 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- 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- 사. 공유림 관리
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
- 가. 지역개발사업
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
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

제16조(주민의 역할) 주민은 우리 고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혜와 정성으로 참여하고,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참여 한다.

- ① 주민은 각 개인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.
- ② 주민 상호간 협담과 비방을 자제하고, 이웃을 칭찬하며, 주민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는 노력을 기울인다.
- ③ 주민 각 개인은 주변에 불우한 계층이 없는지 살피고 보호하며 따뜻하고 인정미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.
- ④ 주민 각 개인은 모든 일에 솔선 앞장서고, 남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린다.
- ⑤ 주민 각 개인은 살기좋은 고장의 주인으로서 인정과 인심을 베푸는 여유를 가져야 하며, 우리고장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관광 홍보요원이 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폐지조례안으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 - 2206